

# 요양비 청구 제도개선 사항 안내(3차)\_2021.9.1.

## 1. 제도개선 개요

- **(배경)**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요양비를 가입자나 피부양자 뿐 아니라 준요양기관에서도 청구가 가능해짐 (2021.6.30.부터 시행)
- **(적용대상)** 2021년 6월 30일 이후 요양비 급여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한 경우부터 적용
  - \*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요양비 급여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하는 경우는 법령 개정 전 청구방식으로 운영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일부개정법률 제17772호 공포(2020.12.29.) … 2021. 6. 30. 시행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>제49조(요양비) 제3항</b>      | ▶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은 준요양기관이 공단에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청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        |
| <b>제57조(부당이득의 징수) 제1항</b> | ▶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및 연대납부의무 부과 근거 마련      |
| <b>제96조의3(서류의보존) 제3항</b>  | ▶ 요양비를 직접 청구한 준요양기관의 청구서류 보존의무 부여 (요양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)             |
| <b>제104조(포상금) 제1항</b>     | ▶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수급자가 보험급여를 받게 한 준요양기관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|

## 2. 주요 용어의 정의

- **(수급권자)** 국민건강보험법(이하 건보법) 제49조1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지급받을 권한이 있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  - \* 이하 동 안내문에서는 수급권자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'환자'라고 약칭 함
- **(수급자)** 건보법 제49조1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제 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지급 받은 수급권자 또는 준요양기관
- **(준요양기관)** 건보법 제49조1항에 따라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
  - \* 건보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·임대업소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
- **(준요양기관 대리청구)** 환자(수급권자)가 요양비를 전액 수급하나 준요양기관이 요양비 지급 신청을 대신 하는 경우
- **(준요양기관 직접청구)** 환자(수급권자)는 본인부담금만 납부하고 준요양기관이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고 요양비를 수급하는 경우

### 3. 요양비 지급 청구 개요

#### ① 청구주체

- 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(= 수급권자 = 환자)
- ②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(= 수급권자 = 환자)의 가족\*
  - \* 수급권자와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, 형제자매, 직계비속의 배우자
- ③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(= 수급권자 = 환자) 및 그 가족이 위임하는 경우 준요양기관이 대리청구 또는 직접 청구 가능

#### ② 청구방법

- 서면청구 또는 전산청구 모두 가능
  - (서면청구) 우편, 방문 통해 청구
  - (전산청구) 환자 및 그 가족은 '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' 준요양기관은 '요양기관 정보마당'

#### ③ 청구 시 제출서류

- ① 환자 또는 그 가족이 청구
  - 처방전, **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**
- ② 준요양기관이 대리청구
  - 처방전, **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**
- ③ 준요양기관이 직접청구
  - 처방전, 세금계산서, **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**

#### ■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■

- ❖ (금액) 요양비 제품 판매금액 총액이 아닌 '**공단부담금액**(부담율 50~90%)'을 기재
- ❖ (내용) 세부 품목별로 기재할 필요 없이 **전체 품목을 묶어서** 기재 가능

| < 세금계산서 기재방식 (예시) > |    |    |        |         |    |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|--------|---------|----|----|--------|
| 예시1                 |    |    |        | 예시2     |    |    |        |
| 품목                  | 규격 | 수량 | 단가     | 품목      | 규격 | 수량 | 단가     |
| 채혈침 외 2종            | 50 | 1  | 75,000 | 당뇨소모성재료 | 50 | 1  | 75,000 |

- \* 다만, 전산 청구(전산 청구서에 품목별 세부내역 기재)가 아닌 **서면청구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(카드전표)에 품목별 세부 내역 기재 필요**
- 서면청구 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에 품목별 세부 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세부 내역이 기재된 **별도의 거래명세서 제출 필요**

#### ④ 서류보관

- 서면청구인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보관
- 전산청구인 경우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것으로 서류보관 인정
  - \* 준요양기관 등은 사무공간 등에 별도로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아도 됨

■ 요양비 법령개정에 따른 청구절차 개선 전·후 비교 ■

| 구분       | 변경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청구<br>주체 | ① 환자 또는 그 가족<br>② 환자 또는 그 가족의 신청에 따라 준<br>요양기관에 요양비 직접지급 가능 | ① 환자 또는 그 가족, 환자 또는 그 가족이 위임하는<br>경우 준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 가능<br>② (삭제)   |
| 청구<br>방법 | ▶ 서면청구(우편, 방문, 팩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▶ 서면청구 및 전산청구* 병행<br>* (환자/가족)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,<br>(준요양기관) (신)요양기관정보마당 |
| 서류<br>보존 | ▶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▶ (서면청구) 국민건강보험공단<br>▶ (전산청구) 준요양기관 서류보존 불필요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# ⑤ 요양비 전산청구 및 청구내역 확인

| 구분            | 청구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개인<br>(환자/가족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요양비 청구 및 청구내역 확인</li> <li>- 공단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서 로그인 후 청구등록 및 조회</li> <li>- (경로) 홈페이지(<a href="https://www.nhis.or.kr">https://www.nhis.or.kr</a>) &gt; 민원여기요 &gt; 개인민원 &gt; 보험급여 &gt; 요양비청구 &gt; ① 요양비청구등록('요양비청구등록' 바로가기), ② 요양비청구내역 조회('요양비청구내역조회' 바로가기)</li> <li>- (가족의 범위) 환자와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</li> <li>※ 모바일(앱/웹)은 청구 및 위임내역조회만 가능함</li> <li>※ 전산청구 건 외 서면청구된 자료도 조회 가능(수급자 정보로 조회)</li> </ul> |
| 준요양기관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요양비 청구 및 청구내역 확인</li> <li>- 최초 이용 시 요양기관정보마당 준요양기관 회원가입 및 인증서 로그인 후 청구등록</li> <li>※ 약국 중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, 회원정보변경(준요양기관 회원 추가 등록) 후 이용</li> <li>- 환자 또는 가족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요양비 전산청구가 가능함에 유의</li> <li>- (경로) 요양기관정보마당(<a href="https://medicare.nhis.or.kr">https://medicare.nhis.or.kr</a>) &gt; 요양비 &gt; ① 요양비 청구 등록, ② 요양비청구내역조회</li> <li>※ 2021. 6. 25.부터 당뇨병 소모성재료 웹EDI 청구메뉴 사용불가</li> <li>※ 전산청구 건 외 서면청구된 자료도 조회 가능(수급자 정보로 조회)</li> </ul>     |

## 4. 준요양기관에 위임 절차

### ① 위임절차

① (서식) 요양비 지급 청구 위임장 \* 건보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6서식

② (구비서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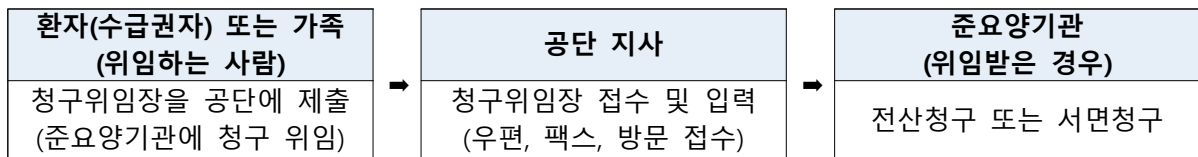
-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(뒷자리 가림처리 가능) 사본 1부

\* 준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미제출

③ (제출방법) 수급권자 또는 가족이 공단 지사로 우편, 팩스, 방문 제출

- 위임정보가 공단 전산에 입력되어 있어야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직접(대리)청구 가능

④ (절차)



### ② 위임기간

○ 최장 2년 가능 (2년 만료 후 자동해지 되므로 갱신 신청 필요)

- 1개의 요양비 종별에 대해 다수의 기관에 중복위임 가능

※ (예시) 홍○○이 당뇨병 소모성재료에 대해 A약국 및 B약국에 중복 위임 가능

- 1개의 기관에 대해 여러 종류의 요양비 청구위임 가능

※ (예시) 홍○○이 A기관에 당뇨병 소모성재료, 연속혈당측정기 등 중복 위임 가능

### ③ 위임내역 확인

○ 준요양기관, 환자 및 가족은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

- (준요양기관) 요양기관정보마당(<https://medicare.nhis.or.kr>) → 요양비 → 요양비 청구위임 내역조회

- (환자, 가족)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<https://www.nhis.or.kr>) → 민원 여기요 → 개인민원 → 보험급여 → 요양비청구 → 요양비 청구위임내역조회 → '요양비청구위임내역' 바로가기

## 5. 시행 유예기간 안내

- (대상) 2021년 6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요양비 급여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한 경우
- (내용) 위임장을 제출하지 하지 않아도 요양비 급여 청구 가능
  - \* 단, 유예기간 종료 후 신규 급여 청구권에 대해서는 위임장 제출 필요
- (청구방법) 전산청구 또는 서면청구(우편, 방문)
- (적용기간) 2021년 11월 30일\*까지 공단에 청구한 건에 적용
  - \* 전산청구'는 공단에 최종 제출일, '우편'은 우체국 소인일, '방문'을 방문접수일 기준

## 6. (참고) 제도시행 이전 건에 대한 적용례

- (대상) 2021년 6월 29일까지 요양비 급여품목을 구입·대여한 경우
- (내용) 법령 개정 전 방식에 따라 위임장 제출 불필요
- (청구방법) 전산청구 또는 서면청구(우편, 방문)
- (적용기간) 2021년 11월 30일\*까지 공단에 청구 필요
  - \* 전산청구'는 공단에 최종 제출일, '우편'은 우체국 소인일, '방문'을 방문접수일 기준
  - \*\* 2021년 11월30일까지 청구하지 않은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지급이 어려울 수 있음